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관련 상임위 보고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8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상협상·조약 관련 보고대상 확대 등	3
2.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수렴	10
3. 산업통상부-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공동개최	12
4. 경제적 타당성 검토 사항 확대 및 국회 보고	14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3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통상협상·조약 관련 보고대상 확대 등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소관사항에 대해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그리고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¹⁾이 통상조약체결계획(§6), 협상 진행 중 주요 변동 사항(§10②) 및 협상 결과(§12)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협상 진행 중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받은 관련 상임위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10③)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사항에 한정한다)</u> 및----- ----- -----

1) 「정부조직법」 개정 전 발의되어 의안원문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이하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작성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략) 1. ~ 5.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 1. ~ 3.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 -----.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상결과 등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 등의 보고 등) ① ----- -----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산중위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제6조), 통상협상 진행 중 통상체결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등 주요 변동 상황(제10조제2항), 통상조약 서명시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의 결과(제12조) 및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제15조)를 산중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중위는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제10조제3항).

[표 2] 현행법상 통상협정 및 통상조약에 관한 국회 보고 등

구 분			보고대상
• 진행 중인 통상협상 및 서명이 완료된 통상 조약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제5조)			외통위, 산중위, 통상 관련 특별위
보 고 사 항	•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제6조)		산중위
	• 통상협상 진행 주요 변동 사항 (제10조제2항)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과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중위
	• 조약서명시 협상결과(제12조)		산중위
	• 통상조약 이행 상황 평가 (제15조)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중위
•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제10조제3항)			산중위

즉, 현행법은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중위가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이러한 보고 대상에 농해수위나 구체적인 통상조약 내용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조약은 농축수산업, 금융, 교육, 환경, 교통,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교역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 분야별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 및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산중위 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통상협상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도 통상협상의 진행 경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농해수위에 대해서는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표 3] 개정안의 국회 보고 및 의견제시 관련 개정사항

조문목록	보고대상 등 추가·확대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농해수위 추가(소관사항 한정)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관련 상임위 추가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의견 제시)	관련 상임위 추가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관련 상임위 추가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각종 분야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및 종사자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소관 산업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통상조약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국내 농축수산업은 구조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통상조약 체결시 피해 우려가 큰 분야이므로, 국회 농해수위가 정부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법률의 제정(2012. 1. 17. 제정, 2012. 7. 18. 시행) 당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조약추진계획, 협상진행절차 등의 보고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소관 위원회로 일원화한 바가 있고,

현행 「국회법」상 관련 위원회 회부제도²⁾를 통해 통상 관련 안건

2)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는 점,

현행법 제5조에서도 통상협상 관련 사항이 복수 위원회 소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및 협상은 금융, 교육, 문화, 방송, 보건, 환경, 교통, 노동 등 거의 모든 부처의 소관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관련 상임위에 개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비효율적일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이고,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통상협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³⁾ 또는 농해수위⁴⁾로 확대하거나, 협상결과를 외통위에 보고⁵⁾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3) 한정애의원 대표발의(220198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19.)

4) 이만희의원 대표발의(220484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5) 홍기원의원 대표발의(220084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24.)

2.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수렴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 <u>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이하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u>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협상-----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생략)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를 통해 통상협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통상조약 체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표 5]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상협상이 농축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면밀하게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대외경제장관회의나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현안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실무차원에서 운영해온 심의·조정 과정을 법률상 절차로 명문화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준비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3. 산업통상부-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공동개최

개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시 농축수산업이 관련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 ----- ----- ----- ----- . 이 경우 농축수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앞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를 널리 알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함⁶⁾.

6) 공청회 예시: 산업부, 한미 관세협회의 관련 공청회 개최...대국민 의견수렴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2982&siteId=1>

개정안은 농축수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추진시 산업통상부와 국회 농해수위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농축수산업은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시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민감 산업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⁷⁾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융자, 피해보전 직불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농축수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통상협상 추진 전부터 선제적·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분야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책을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통상협상 및 조약은 금융, 교육, 문화, 방송, 관광, 보건, 환경, 교통, 통신,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른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형평성·효과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7) ※ 농업 내 축산업 등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적 타당성 검토 사항 확대 및 국회 보고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시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전망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산중위 및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u>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u>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신설>	1. <u>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u>
<신설>	2. <u>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u>
<신설>	3. <u>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u>
<신설>	4. <u>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때에는 그 결과</u>

현행	개정안
	<u>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대외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u>

현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등의 출연연구기관이 통상조약 체결시 양국의 후생 증대 기여 여부 및 규모, 양국간 논의 쟁점 및 국내 정책적 고려사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철회나 재협상이 어려운 국가간 조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협상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전망산업의 지원대책도 사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보다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보고 과정에서 국내 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기에 고려·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데 실제 조약 체결

전에 지원대책 등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은 통상조약 문안 합의시 국내산업 영향평가(제11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영향평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제13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전검토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상대국 조약체결 의향이 낮은 경우 등에서 통상협정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점과

현행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산중위에 보고하고 있으며,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시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고 사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통상조약법상 주요 규정

○ 국회 보고

기본 조항 (제5조)	정부는 외교위·산중위·통상관련특위 요구 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	산업부장관은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산중위원회에 보고 ※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등
---	--



통상협상 진행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보고 (제10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중요사항 변경, 국내 산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중위원회에 보고 ※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가능
-------------------------------------	--



서명 후 협상결과의 보고(제12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산중위원회에 보고
------------------------	--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 비준동의 요청시 제출 자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5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중위원회에 보고
--------------------------------------	--